

16. 재학조교 채용 규정

제정일 : 2007년 9월 12 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의 교육 및 연구의 수련과 또한 장학의 한 방도로서 재학조교의 제도를 두고 자격기준과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재학조교는 사무조교(강의, 기타 사무보조), 연구조교(개인교수 의 연구보조)로 구별한다.

제3조(의무) 재학조교는 해당교수의 지도하에 주당 12시간 내외로 교수의 연구 활동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학금의 급여) 재학조교중 사무조교는 **본교**에서 조교장학금을 지급 하며, 연구조교는 해당 **연구소 및** 교수의 연구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자격) **본교** 학생으로서 정규 등록자에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신청) 재학조교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학생처장을 경유하여 소정 기일 내에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교** 소정의 신청서 1매
2. 사진(반명함판) 1매
3. 최종졸업증명서 1통

제7조(심사) 학생처장은 신청자의 입학 또는 재학성적, 인품, 재신청의 경우 전학기의 근무 태도에 관한 해당교수와 근무예정기관의 의견을 참작 하여 임명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8조(임명) 학기마다 학생처장에 의해 추천된 자는 총장이 재학조교로 임명 한다.

제9조(임명취소) ①재학조교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는 해당교수 또는 근무기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학조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임명이 취소된 자는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07년 3월 1일로 소급 시행한다.